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

발 의 자 : 박범계 · 강준현 · 김승원
이광희 · 박지원 · 문정복
박정현 · 이성윤 · 강득구
허영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·심의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.

그러나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동의의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

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
(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3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범계위원이 대표발의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49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
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
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로 하고,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시정방안 준수 요구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(이하 이 조에서 “피심인”이라 한다)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 행위”라 한다)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행위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소방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,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.

제37조제2항 중 “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”를 “제102조제5항 및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4조의3”을 “제34조의4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34조의3”을 “제34조의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4조의2(시정방안 준수 요구)</u> <u>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</u> <u>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</u> <u>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</u> <u>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의를 받</u> <u>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</u> <u>역본부(이하 이 조에서 “피심</u> <u>인”이라 한다)에게 해당 조사</u> <u>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</u> <u>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 행위”라</u> <u>한다)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</u> <u>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</u> <u>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</u> <u>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행</u> <u>위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</u> <u>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</u> <u>래위원회는 해소방안을 요구하</u> <u>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</u> <u>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</u> <u>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</u> <u>에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동</u> <u>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</u>

	수 없다. ③ <u>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</u> <u>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</u> <u>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</u> <u>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</u> <u>여 진행할 수 있다.</u> ④ <u>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</u> <u>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</u> <u>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</u> <u>하지 아니하며, 누구든지 피심</u> <u>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을</u> <u>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</u> <u>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</u> <u>할 수 없다.</u>
<u>제34조의2(동의의결) (생략)</u>	<u>제34조의3(동의의결) (현행 제34</u> <u>조의2와 같음)</u>
<u>제34조의3(동의의결 절차 및 취</u> <u>소) (생략)</u>	<u>제34조의4(동의의결 절차 및 취</u> <u>소) (현행 제34조의3과 같음)</u>
<u>제34조의4(이행강제금) (생략)</u>	<u>제34조의5(이행강제금) (현행 제3</u> <u>4조의4와 같음)</u>
제37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① (생 략)	제37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① (현 행과 같음)
②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 과·징수에 관하여는 「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	② ----- ----- -----

<u>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</u>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③ (생략) ④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,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및 <u>제34조의3</u>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를 준용한다. ⑤ <u>제34조의3</u>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.	<u>제102조제5항 및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</u>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34조의4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⑤ <u>제34조의4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